#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97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6.

발 의 자: 박정하 • 박준태 • 박성민

이인선 · 김용태 · 박수민

이종욱 · 서명옥 · 박덕흠

신성범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(「신탁법」 제59조 및 제60조)의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에 관한 과세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또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연속수익자는 수익권 취득 시점에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수탁자로부 터 신탁재산의 귀속 시점이 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이중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.

이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사후 연속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, 이후 수탁자가 해당 연속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조세평등원칙을 실현하고 유언대용신탁 및수익자연속신탁을 활성화 하고자 함(안 제7조제17항 및 제9조제3항제4

호 신설).

##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「신탁법」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 속신탁의 위탁자 사후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수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그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제7항을 준용한다.

제9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7조제17항에 따라 수익권을 취득한 자가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납세의무자 등) ① ~ 16	제7조(납세의무자 등) ① ~ 16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 <u>신 설</u> >	① 「신탁법」 제59조 및 제60
	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 및 수
	익자연속신탁의 위탁자 사후
	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수
	익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
	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그 수익
	자가 상속인인 경우 제7항을
	<u> 준용한다</u> .
제9조(비과세) ① ~ ② (생 략)	제9조(비과세) ① ~ ② (현행과
	같음)
③ 신탁(「신탁법」에 따른 신	③
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	
것만 해당한다)으로 인한 신탁	
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
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	
한다. 다만, 신탁재산의 취득	
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	
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	
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	
외한다.	
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 <u>신 설</u> >	4. 제7조제17항에 따라 수익권
	을 취득한 자가 신탁의 종료
	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
	재산을 이전하는 경우